

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1. 1. 21.(금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
양문석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고시 일괄 정비에 관한 건 - (2011-03-007)

○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전파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위한 기준 등 2건의 고시를 제정하고,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4건의 고시를 개정하며,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중 제·개정 권한을 전파연구소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 11건의 고시를 폐지하기 위해 마련된 「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고시 일괄 정비에 관한 건」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① 고시 제정 : 2건

①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(안)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2분기에 한하여 전부 감면함

② 전자파강도* 및 전자파흡수율** 측정대상기자재(안)

- ‘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자재’의 고시 권한이 전파연구소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함

* 전자파강도 : 방송국, 이동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의 정도로서 관련 기준 초과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함

** 전자파흡수율 : 휴대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로서 관련 기준 초과시 적합성평가를 받지 못하여 제조·수입·판매 불가

② 고시 개정 : 4건

① 전파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, 한국전파진흥원의 명칭변경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민원서식 통합 및 누락 서식 신설 등을 위한 고시를 개정함

< 개정고시 내용 >

고시명	주요 내용
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	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, 서식 간소화 등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	명칭변경 : “한국전파진흥원”을 “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”으로 변경
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면제 과목 등에 관한 사항	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4급 아마추어무선 기사 관련 내용 반영 등
무선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	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

③ 고시 폐지 11건

- ①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중 전자파보호기준 등 4개 고시를 전파연구소장에게,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처리기준 등 7개 고시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함에 따라 해당 고시를 폐지함

< 위임에 따라 폐지되는 고시 내용 >

전파연구소장 위임 고시	① 전자파보호기준 ② 전자파장해방지기준 ③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④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·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
중앙전파관리소장 위임고시	⑤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⑥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⑦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 ⑧ 전파감시·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⑨ 조사시험 및 조치기준·방법 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 ⑪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

2) 「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03-008)

- 박재문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2010년 제74차 위원회(12. 13) 보고 후 입안 예고,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「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(고시)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- ①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운영 및 관리기관(한국전파진흥원)에의 사무위탁 범위 등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
 -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그 외의 사항은 심의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
 - 분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·징수 등 사무위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, 업무수행의 세부방법을 규정함
 - 관리기관은 자산운용위원회를 두어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,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함

- ② 지출사업의 이월, 결손처분 사유 등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
 -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, 기금 지출사업의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
 -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결손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
 -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별 특성에 따른 수행방법 및 집행잔액 반납 절차 등을 규정함
 - 기금사업 수행기관은 기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
 - 출연사업, 위탁사업, 용자사업, 출자 및 투자사업, 보조사업 등 사업의 특성에 따른 수행방법 및 예산비목 편성의 기준을 정함
 - 사업수행 단계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반납절차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
- ※ 당초안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, 변경사항을 전파진흥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등 일부 내용 수정(전파진흥원 의견 등 반영)

3) 「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」(고시) 및 부속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03-009)

- 박재문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2010년 제74차 위원회(12. 13) 보고 후 입안 예고,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「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」(고시) 및 부속 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- 주요 내용
 - 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, 과학기술기본법,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등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관리규정을 수용
 - **(추진 체계)** PM의 역할, R&D 사업의 심의·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·사업심의위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- **(추진 절차)** 과제 기획·수행기관 선정→사업의 공고·평가·과제 관리→결과물의 활용·기술 이전 등 R&D 사업 절차
 - **(추진 방법)** 사업비의 편성·집행·정산, 협약의 체결 등 전담기관의 역할과 사업 수행 방법

- ② 기술료 징수·관리, 연구 보안, 연구윤리 준수 등 R&D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부속규정 및 지침(훈령)으로 위임

사. 보고사항

1)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방송인프라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

- 중소 방송사를 대상으로 기획, 제작, 편집, 송출, 유통 등을 통합 지원함으로써,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방송인프라 구축방안을 박재문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 받음

○ 주요 내용

① 지원센터 개요

- ①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부응한 방송콘텐츠 제작-송출-유통 등의 통합 지원시설로서 차세대 방송콘텐츠 산업 허브로 구축(중소방송사 등 대상)

※ 조성규모 : 지상 18층, 연면적 55,952㎡, 스튜디오 6개, 편집실, 송출실, 중계차

② 방송인프라 구축방향

- ① **(디지털 워크플로우)** 방송기반 전체(촬영, 제작, 편집, 송출, 유통 등)를 네트워크·클라우드 기반 Tapeless 시스템으로 구축

※ Digital Workflow : 콘텐츠 제작, 편집, 송출 등의 전과정을 파일(Tapeless) 기반화

- ② **(3D·CG 제작환경)** 3D 전용 스튜디오, 첨단 CG 제작시설 및 N스크린 지원 설비 등 차세대콘텐츠 창작기반 조성

- ③ **(1인창작 지원 등)** 창작카페, 교육실 등 인큐베이팅센터, 저장·유통시설 구축을 통한 수익기반 조성 및 국내 방송장비 경쟁력 확보

③ 추진 방법

- ① 대형 스튜디오는 드라마 전용, 중소형 스튜디오는 교양, 다큐, 드라마, 시트콤 등의 용도로 구축

- ② '11년에 3D카메라(4set), 중계차 도입 및 시범사업(편집장비 위주) 검토

- ③ 전문설계·시공 및 공사의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조달청 공개입찰 적용

- ④ 실비 수준의 장비 이용료 부과, 사용자(제작자) 위주 상시 운영체제 도입 등

2) 스팸방지 종합대책(안)에 관한 사항

- '09. 10월 발표한 종합대책 세부과제에 대해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기술발전 추세, 스팸발송 경로 등 스팸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·보완한 「스팸방지 종합대책(안)」을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.

- 추진계획 주요내용(4개 영역, 13개 세부 추진과제)

① 휴대전화 스팸 방지

① 사업자 책임의식 강화를 통한 스팸발송 억제

- 다량의 스팸을 유발하는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(Biz-SMS, C2P 등) 사업자에 대해 통신회선의 전송속도를 축소(20%)하고 사업자간 스팸전송자 정보를 공유(KISA 통합 DB구축)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
- 인터넷전화(VoIP) 사업자의 서비스 개통 및 문자발송량 관리 등 스팸방지 자율 규제 수준 강화(1일 500통으로 제한, 1년간 재가입 금지 등)
- 대리점 등의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확인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하여 명의대여에 의한 스팸발송 휴대전화 개통 방지

② 전송·수신 단계의 취약요인 개선을 통한 스팸차단 효율성 제고

-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이통사 「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」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(10년말 초등학생 기 가입, 11년 상반기 중·고생, 11년 하반기 일반 이용자, 이통사 총 200억원 투입 처리용량 확대)
- 확인된 스팸번호로부터 전송되는 모든 스팸문자를 네트워크 단계에서 신속히 차단하고, 악성스팸 전송자를 최단시간 내 가려내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「실시간 스팸 통보·관리체계 구축」

③ 스팸 전송자 규제 강화

- 스팸 전송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는 물론, 스팸 전송 기술발전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을 연구·검토하고, 「불법스팸방지 안내서」 현행화
- 지인(知人)을 가장한 사기성 스팸전송을 통해 부당하게 정보이용료를 편취하는 성인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(발송된 스팸 전체의 과금을 취소, 영구 퇴출 추진 - 1 strike out 제도)

④ 과태료 징수율 제고

- 관련부처 재산DB 연계를 통해 징수 가능한 스팸 과태료를 파악하여 별개 징수화 하고, 징수활동을 독려하여 징수율을 제고(징수가능액 대비 목표 22%)하는 한편, 관련 수사능력 강화(징수·수사인력 108명 증원 추진)
-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범위 및 징수 방법의 다각화 검토

② 신종 스팸 방지

- ① 인터넷 게시글을 실시간 자동·분석하여 차단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개발하여 스팸 대응이 부진한 개인, 중소기업, 인터넷언론 등에 무상 제공

③ 스팸지수 발표, 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확대

- ① 휴대전화나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스팸유통량을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, 사업자의 자발적인 스팸감축 노력 제고(반기 1회)
-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스팸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「종합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 구축」(’11년 전략계획 수립, ’12년 시스템 구축)
- ③ GSMA(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)주관 ‘글로벌 스팸 방지 프로젝트’를 추진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의 스팸방지 기술과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국제 표준화 추진

④ 이용자 스팸방지 인식 제고

- ① 「스팸방지 SMART 5대 수칙(차단 서비스, 차단 기능, 번호 관리, 스팸이용 금지, e콜센터☎118 활용)」을 마련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. 1. 26(수)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 (11:05)